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가목”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9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

이재갑

●대통령령 제30074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원,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9월 1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075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를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로 한다.

제13조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해외공사 상황 보고)”를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호나목”을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수주활동

시공

제19조제1항제4호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을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건설업자를”을 “해외건설사업자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를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